

• 지문의 일부만 복원된 경우 임의로 지문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으므로 실제 시험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음.

### 1 행정 및 행정학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다.
- ② 윌슨(W. Wilson)이 1887년 발표한 「행정의 연구」는 행정은 순수한 관리현상으로서 수단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③ 미국의 초기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했다.
- ④ 행정의 기본가치인 근검절약과 효율성 실천수단은 경영에서 도입되었다.

해설

③ (×) 미국의 초기 행정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행정관리론이며, 행정과 정치의 분리(정치·행정2원론), 경영과 행정을 유사하다고 보는 공사행정1원론, 공공사무의 관리작용으로서의 행정, 경영이론인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미국 행정학은 경영학과 유사했다.

답 ③

### 2 다음 중 사회적 자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 ② 후쿠야마(F. Fukuyama)는 국가의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 ③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된 공공적 자원이다.
- ④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해설

① (×)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 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zero 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하는 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자기강화적이고 사용할수록 증가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한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의 생산과 파괴는 그 사용 정도에 따라 선순환 되기도 하고 악순환 되기도 한다.

답 ①

### 3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적 인간관                      ② 과학적 방법의 적용                      ③ 가치와 사실의 분리                      ④ 다학문성(종합학문성)

해설

① (×) 행태주의는 인간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 수동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 구 분    | 행태론(실증주의)                                     | 현상학적 접근                                      |
|--------|-----------------------------------------------|----------------------------------------------|
| 인 간    | 결정론(determinism) - 수동적·원자적 자아                 | 임의론·자발론(voluntarism) - 능동적·사회적 자아            |
| 이성의 유형 | 도구적·기술적 이성(instrumental reason)               | 실천적·해석적 이성(practical·interpretive reason)    |
| 지식의 목적 | 인간에 대한 통제(자연과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이성적 활동으로서의 지식) | 인간에 대한 이해(단순한 설명이 아닌 어떤 사상[事象]이나 행위의 의미를 이해) |

답 ①

### 4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
- ② 비공식적인 것은 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분균형성을 중시했다.
- ④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동적인 것으로 본다.

해설

② (×) • 제도의 의미

- ① 구제도주의: 공식적 제도에 한정. 제도를 공식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나 정부구조처럼 가시적·구체적 기관으로 파악.
- ② 신제도주의: 공식적 제도 + 비공식적 제도. 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상태를 이루거나 상태를 습득한 사회질서, 규범, 조직, 규칙, 행위의 조직화된 반복적 유형.

답 ②

## 5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대 뷰캐넌(J. Buchanan)과 톨록(G. Tullock)이 창시하였으며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한다.
- ② 시장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정부실패를 고려하지 않았다.
- ③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행정이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④ 사표심리는 공공선택의 규칙 하에서 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 해설

- ② (×)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에 연관된 이기적인 개인들(투표자, 관료, 이익집단,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부실패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 ③ (○) 고전적 패러다임(Wilsonian - Weberian Paradigm)은 행정의 목표와 과업은 정치에서 결정되며, 행정은 정치와 분리된 존재라는 정치행정2원론이었지만 Ostrom의 민주행정패러다임은 행정이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행정과 정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행정1원론이다.
  - ④ (○)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사표방지심리를 갖고 투표에 임하기도 한다. 사표방지(회피)심리란,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정으로 선호하는 후보가 아니라 차선택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심리이다(예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측이 '이회창을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되지만,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홍보문구로 사표심리를 이용). 이러한 투표행태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행위로 볼 수 있다.
- cf) 투표자의 행태를 분석한 이론 - 다운즈(A. Downs)의 투표자의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이론' : 전통적 정치이론이 투표 불참 및 정보의 무지를 민주정치의 실패로 간주한 반면, 공공선택론은 오히려 투표자의 합리적 선택의 모범적 예로 본다. 즉,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는 않으나 투표는 하지 않는 것을 투표자의 '합리적 무시'로 본다. 합리적 무시는 어떤 정보가 주는 편익보다 그것을 얻기 위한 비용이 큰 경우 그 정보를 얻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투표에도 적용된다.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위에는 편익과 비용이 수반된다. 투표에 따른 편익은 비판 및 견제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으로 자신의 권리 이행 및 보람을 느끼는 것이며 투표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정부 수집 및 분석에 드는 노력,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이다. 한편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 높지 않을 뿐더러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이 100% 실현될 확률은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개별 유권자는 투표가 주는 편익보다 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를 '합리적'으로 무시하며, 이는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답 ②

## 6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고객위주행정을 수행하는 공공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 ②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명하고 충족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정부는 성과지향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을 모두 지향한다.
- ④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서비스여야 한다.

### 해설

- ① (×) 관료가 고객위주의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국민을 고객이 아닌 시민으로 보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보다 citizenship(시민정신·시민의식)을 강조한다.
-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Serve citizens, not customers)** : 공무원이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시민 사이의 믿음·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함.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이외의 사람들(약자)에게도 봉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저버리면 안 됨.
- **기업가정신보다 citizenship(시민정신·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의 가치 중시(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 공무원은 거버넌스 과정의 책임 있는 참여자이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다. 공적자금의 관리자, 공공조직의 유지자, 시민정신과 민주적 담론의 촉진자, 공동체가 성립되게 하는 촉진자, 일선업무의 지도자(street-level leader ; 길바닥 수준의 리더, 시민에 근접한 일선의 리더)로서 역할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할 책임을 진다.
- ②④ (○)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조정)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Serve, rather than steer)** : 정부역할은 규칙제정과 같은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서비스(봉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 관련 당사자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타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명하고 충족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 ③ (○)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음(Accountability isn't simple)** : 정부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시장지향적·성과지향적인 이윤 추구·달성뿐만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 공동체가치, 정치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다면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답 ①

## 7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인가?

내부관료 또는 소수의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주도집단이 정책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며, 특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숨기려 한다. 사회문제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바로 정책의제화되지만, 공중의제화는 억제되며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 하지 않은 일종의 음모형이다. 이 모형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① 외부주도형                      ② 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④ 군히기형



## 10 정책집행의 성공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적 타당성
- ② 집행절차의 합리성과 규정의 명확성
- ③ 정책목표 우선순위의 유연성
- ④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의 지속적인 지지

### 해설

③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하향적 접근) -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어(D. Mazmanian)

- ㉠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것(정책 목표와 수단간 인과관계, 기술적 타당성).
- ㉡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법적 구조화).
- ㉢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할 것.
- ㉣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을 것
- ㉤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

답 ③

## 11 다음 중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방송통신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금융위원회

### 해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고 나머지 기관은 국무총리소속이다.

|              |                                              |                                                                                                                                                  |
|--------------|----------------------------------------------|--------------------------------------------------------------------------------------------------------------------------------------------------|
| 대통령<br>소속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 헌법상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
| 국무총리<br>소속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4처(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협의회, 중앙징계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

\* 2020.8.5.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 예정.

답 ②

## 12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의 규모를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했다.
- ② 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우리나라 정부구성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④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에 해당하며 주인-대리인문제를 시정하여 행정윤리를 강화한다.

### 해설

- ① (×)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의 권력을 강화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표방하고 있다.
- ② (○) 레임 덕(Lame Duck)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여당(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대립할 경우 대통령의 정책추진이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막힐 수 있어 레임 덕의 발생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 ③ (○) 우리나라 정부구성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국무총리(부통령이 없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등) 겸임 가능,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위원의 부서(副署) 등을 들 수 있다.
- ④ (○)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과 행정(또는 행정관료)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대리손실(관료의 도덕적 해이)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시민단체는 외부통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답 ①

### 13 조직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성이 낮아지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 ② 집권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③ 조직규모가 커지면 조직구조의 복잡성도 높아진다.
- ④ 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 해설

- ① (×)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인 공식성은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이며,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대해 조직이 규칙·절차에 의존하는 정도이다. 공식성이 높아지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하므로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창의성·재량성을 더 제약하게 된다.
- ② (○) 조직의 위기나 비상사태에 대응해 신속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적 운영이 필요하다. cf) 환경의 불확실성이 클 경우 분권적 구조 필요.
- ③ (○) 조직구조의 복잡성은 분화(분업)의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규모가 커지면 직위와 직원 수가 증가하고,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촉진되므로 규모와 복잡성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
- ④ (○) 조직의 분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분화된 각 개별 부문 간 통합과 조정은 더 어려워진다.

답 ①

### 14 다음 중 학습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부의 압력에 의한 동형화와 전문화 과정을 통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중간관리자들의 지식관리와 정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흐름이 중시된다.
- ③ 전 직원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므로 조직문화에 적응적이다.
- ④ 학습조직의 기본단위는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 기능팀이다.

#### 해설

- ① (×) 제시된 내용은 강압적 동형화와 규범적 동형화이다.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는 서로 동일한 조직환경이나 장(organizational field)에서 한 조직단위가 성공한 다른 조직단위를 닮아가는 제약적인 과정으로서 사회학적 신제도론, 거시조직론 중 제도화이론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며, 학습조직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 ② (○) Nonaka와 Takeuchi는 학습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미들업다운관리(middle-up-down management)’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지식창출형 조직에 적합한 관리방식인 미들업다운 관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관리전략으로서 중간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최고관리층에 의해 창출된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의 현장정보·지식과 주도적으로 연결 관리하여 효과적인 지식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간관리자는 지식창출 팀의 리더로서 최고경영진과 실무작업층을 연결하는 통합과 변화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Nonaka와 Takeuchi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 조직(hypertext organization)’은 ‘미들업다운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상의하달식도 아니고 하의상달식도 아닌 중간관리자 주도의 형태이며 중간관리자가 지식관리와 정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흐름의 중심이 된다
- ③ (○) 학습조직은 전직원이 문제의 규명 및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조직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증대하는 데 초점을 두며,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구성원 상호 간의 동정과 지원 정서(상호호혜), 공동생산, 협력, 일체감을 강조하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 ④ (○) 조직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학습조직의 기본 단위는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기능팀(cross-function team)이다. 수직적 구조는 구성원 상호 간 거리감을 발생시키므로 수평적 구조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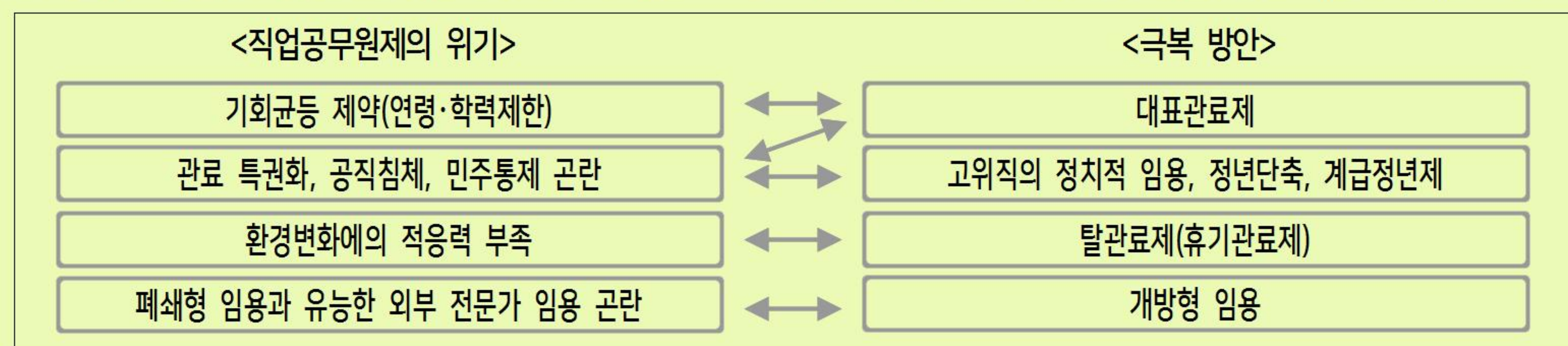
답 ①

### 15 직업공무원제의 개선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은?

-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 ② 고위공무원단 도입
- ③ 경력개방형 직위
- ④ 성과급 강화

####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②③는 모두 개방형 임용과 관련된 것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④ 성과급의 경우 연공급·생계급 체계인 직업공무원제의 보수체계와 달리 성과향상을 위한 유인기제로서, 개방형 임용시 적용되기도 하는데 고위공무원단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이 그 예이다. ①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우리나라에 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가 인정되지 않던 시기에 이를 설치하여 하위직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교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하위구성원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만드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되어도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기는 힘들다.



답 ①

16 다음 중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 계급제는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 엽관제는 정치적 임용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게 도울 수 있다.
- ㉢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에 유리하다.
- ㉣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계급제는 폐쇄형 임용과 일반행정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수평정 인사이드가 융통적으로 이뤄지므로 일반행정가 양성은 가능하지만, 순환보직 등 여러 직책을 옮겨 다니며, 외부전문가 임용이 곤란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전문행정가 양성이 곤란하다.
- ㉡ (○) 엽관제는 정치지도자가 정치적 신념과 이해를 공유하는 자를 공직자로 임명하여 행정을 수행한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거공약이나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 (○) 실적주의(공채·정치적 중립)에 입각한 '중립적' 관료제는 대응성·민주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출신집단에서의 심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 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향상시켜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 (×)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엽관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민주성과 형평성이라는 내용과는 구별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엽관주의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집권한 정당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집권자가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국민들에게 공약한 정책을 구현하므로 민주성과 관련된다. 또한 엽관주의는 당시 미국 상황에서 특권계층(미국 동부 상류계층)에 의한 공직독점을 타파하고 공직을 만민에게 개방한 점에서 형평성과 관련된다(단, 공직에의 기회균등은 보장되지 못함). 엽관주의 폐해로 인해 실적주의가 등장하고 일반화되었으나 실적주의가 지닌 민주성·책임성의 약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날 적극적 인사행정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엽관주의적 임용(정치적 임용)이 가미되는데 이는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실적주의가 지닌 실질적 기회균등의 약화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관료제가 형평성 확보(수직적 평등 실현)와 관련된다.

답 ②

17 다음 제시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자치경찰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 ㉡ 행정각부의 차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이다.
-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고위공무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 (×)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에만 인정된다.
-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군인은 군인연금법 적용).

답 ②

18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대부분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 다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단계이다.

해설

- ① (×) 성과계약등의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을 대상으로 한다.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우정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도 소속장관이 인정할 경우 '성과계약 등의 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

■ 성과계약 등의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 방식   | 성과계약 등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                                                                                      |
|------|----------------------------------------------------------------------------------------------|---------------------------------------------------------------------------------------------|
| 평가대상 | 4급 이상, 연구관·지도관<br>(5급 이하 및 우정직도 소속장관이 인정시 가능)                                                | 5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우정직 공무원                                                                     |
| 평가시기 | 정기 : 년 1회(12.31.)                                                                            | ① 정기 : 년 2회(6.30, 12.31). 단, 연 1회만 실시 가능<br>② 수시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발생시                         |
| 평가항목 |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 *성과목표 달성도가 평가항목의 필수내용은 아님 |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 운영평가 추가 가능)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장관이 직급별·부서별·업무분야별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정함 |

- ② (○) 상관평정 방식에 비해 다수의 평정자를 활용하는 평가의 다면화·입체화를 통해 인사평정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 2016년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 전공은 기재. 예 대학교[행정학 전공]), 신체사항은 삭제하고 교육훈련과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의 역량개발 정보와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등의 성과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 (○) 직무평가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개개의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다. 직무평가 방법에 절대평가방식(기준표를 활용하는 분류법, 점수법)과 상대평가방식(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서열법, 요소비교법)이 있다는 표현과는 구별해야 한다.

답 ①

## 19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성 위주의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성평등에 기여한다.  
② 성인지예산의 적용범위에는 기금(基金)도 포함된다.  
③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④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

해설

- ①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이지 여성 위주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  
②④ (○) 편성(중앙관서의 장은 성인지예산서, 기금관리주체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심의 ⇨ 집행 ⇨ 결산(중앙관서의 장은 성인지결산서, 기금관리주체는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③ (○) • **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규정)

- ㉠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함)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  
㉢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답 ①

## 20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과 달리 법률보다 하위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해설

- ①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집행부(내각)를 구성하므로 예산심의과정이 엄격하지 않으며, 실제 영국·일본은 의회에서 예산 수정이 거의 없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 관계이므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막강하고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미국 의회는 새 비목 설치권과 증액권도 보유하며 행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도 의회가 입안하여 의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됨으로써 국회에서의 수정비율이 크지는 않으며, 헌법상 지출예산의 각 항 금액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의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답 ①

## 21 예산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 ㉠ 이용과 전용                      ㉡ 기금                      ㉢ 신임예산                      ㉣ 예비비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이용·전용은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                      ㉡ 기금은 완전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  
㉢ 신임예산은 공개성·명세성 원칙의 예외.                      ㉣ 예비비는 양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

답 ②

### 전통적 예산원칙과 예외, 현대적 예산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                                               |                                                                                                | 현대적 예산원칙                                                                                                                                                                              |
|----------------|-----------------------------------------------|------------------------------------------------------------------------------------------------|---------------------------------------------------------------------------------------------------------------------------------------------------------------------------------------|
| 유형             | 내용                                            | 예외                                                                                             |                                                                                                                                                                                       |
| 공개성            | 국민에게 공개                                       | 신임예산, 국가정보원 예산(정보비)이나 국방부 일부 예산 등은 안보상 이유로 비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책임</li> <li>• 행정부재량</li> <li>• 행정부계획</li> <li>• 예산기구 상호교류</li> <li>• 보고</li> <li>• 다원적 절차</li> <li>• 적절 수단 구비</li> <li>• 시기신속성</li> </ul> |
| 명확성·명료성        |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 총액(총괄)예산(총액계상예산), 예비비                                                                          |                                                                                                                                                                                       |
| 명세성            | 구체적 항목에 따라 세분화                                | 총액(총괄)예산                                                                                       |                                                                                                                                                                                       |
| 엄밀성·정확성        | 예산(예정) = 결산(확정)<br>*세입 = 세출(수지균형)도 포함하는 견해 있음 | 예산불용액, 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장치로 인한 예산·결산 간 불일치 *엄밀성을 세입 = 세출로 볼 경우 흑자예산, 적자예산                          |                                                                                                                                                                                       |
| 한정성            | 양적 한정성(초과지출 금지)                               |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                                                                                                                                                                                       |
|                |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 이용, 전용, 예비비                                                                                    |                                                                                                                                                                                       |
|                | 시기적 한정성(회계연도독립원칙)                             |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지난 연도 수입·지출, 긴급배정                                                |                                                                                                                                                                                       |
| 단일성            |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예산                                                    |                                                                                                                                                                                       |
| 통일성            |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결 금지.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 기금,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 사전의결 원칙        |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공공기관의 예산,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선결처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                                                                                                                                                                                       |
| 완전성·포괄성 예산총계주의 | 모든 세입·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포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공공기관의 예산, 기금, 정부의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

## 22 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합리성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더 중시한다.  
② 부서별 자원배분이 아닌 부서의 경계를 초월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별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③ 영기준예산제도(ZBB)보다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므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참여한다.  
④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 해설

- ③ (×) 계획예산제도(PPBS)는 전문 막료 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대통령에게 권한 집중, 부처 내에서는 국·과보다는 장관에게 권한 집중)시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하다.

답 ③

## 23 우리나라 행정개혁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행정쇄신위원회 - 정부 3.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열린 혁신  
② 행정쇄신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 3.0 - 열린 혁신  
③ 행정쇄신위원회 - 정부 3.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열린혁신  
④ 열린 혁신 - 정부 3.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행정쇄신위원회

### 해설

| 김영삼 - 文民정부 | 김대중 - 국민의 정부             | 노무현 - 참여정부  | 이명박 - 실용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 행정쇄신위원회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br>정부혁신추진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별도의 개혁추진기구 없음 | 정부 3.0 위원회 |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표방 |

답 ②

## 24 다음 중 지방자치 행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주민에게 조언, 권고, 정보제공 등 비권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행정이다.
- ② 국가행정이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비해 지방행정은 형평성 제고를 더 중시한다.
-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한다.
- ④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중통제와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② (×)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념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국가행정은 형평성(공평성)을 더 중시하지만 지방행정은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답 ②

## 2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거리가 단축된다.
- ② 다층제에 비해 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 및 개별성을 더 존중한다.
- ③ 중앙정부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 ④ 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행정책임이 명확해진다.

해설

③ (×) 단층제는 중앙집권화와 중앙정부의 비대화 우려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라는 여과장치가 없어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답 ③

### 단층제와 중층제(다층제)의 장·단점

| 구분 | 단층제(single - tier system)                                                                                                                                                                                                                                                                                                                                                                                                        | 중층제·다층제(multi - tier system) * 2층제                                                                                                                                                                                                                                                                                                                                                                                                                                                                                                                                                |
|----|----------------------------------------------------------------------------------------------------------------------------------------------------------------------------------------------------------------------------------------------------------------------------------------------------------------------------------------------------------------------------------------------------------------------------------|-----------------------------------------------------------------------------------------------------------------------------------------------------------------------------------------------------------------------------------------------------------------------------------------------------------------------------------------------------------------------------------------------------------------------------------------------------------------------------------------------------------------------------------------------------------------------------------|
| 장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계층 수가 적어 이중행정이나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 경유기관을 줄여 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감소</li> <li>② 행정책임의 명확화(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됨)</li> <li>③ 다층제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개별성 존중</li> <li>④ 중앙정부와 주민 간 의사소통이 다층제보다 원활, 주민의사의 누수 방지</li> <li>⑤ 모든 자치단체가 수평적 대등관계에서 상호 간 경쟁·협력·분담관계를 활성화</li> <li>⑥ 중간단계가 없으므로 '작은 정부' 차원에서 볼 때 규모의 축소가 구현됨</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체계, 행정기능의 적정관리규모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구획하여 전문성·효율성 제고(광역: 전략적 기능, 기초: 전술적 기능)</li> <li>② 중간자치단체가 보완, 대행, 감독, 광역행정기능 수행(기초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을 보완,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의 사전 조정,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광역적 사무 수행)</li> <li>③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 적합</li> <li>④ 국가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관계 유지, 중앙의 직접통치가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으로 대체되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감독·간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가의 감독기능은 유지됨.</li> <li>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작아 주민의 접근성 증대, 주민참여 용이,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 민감성 향상</li> <li>⑥ 지방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반영(혈연적·지연적 공동체는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수립 후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광역자치단체)</li> </ol> |
| 단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광역적 행정·개발사무처리에 부적합</li> <li>② 자치단체 간 갈등이 중앙의 이슈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전조정 곤란</li> <li>③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 부적합(중앙정부의 통솔범위가 넓어져 다수의 지방정부 통제·조정 곤란)</li> <li>④ 중앙집권화와 중앙정부의 비대화 우려(광역자치단체라는 여과장치가 없어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음)</li> <li>⑤ 계층 수 축소는 구역의 크기를 확대시켜 다층제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저하, 주민참여 곤란,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민감성 둔화</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중감독, 이중행정의 폐단으로 인한 비능률, 경유기관 증대로 인한 행정지연과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증대</li> <li>②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책임의 불명확성(책임의 전가, 행정책임의 사각지대 발생)</li> <li>③ 지역별 특수성·개별성 경시(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구역 내 모든 행정기능을 광역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처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li> <li>④ 국가와 주민 간 상향적 의사전달과 하향적 행정침투의 왜곡·저해</li> <li>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쟁·협력관계에 대해 간섭·통제하므로 자치단체의 외교적 역량의 성장을 방해</li> </ol>                                                                                                                                                                                   |